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2029
-----------	------

2020년 12월 17일
교 육 위 원 회

I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3. 상정일자
 - 제298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20년 12월 17일 상정, 원안 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길환 총무과장)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19. 12. 31.)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적이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 및 학습휴가, 경조사휴가 등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휴가(여성보건휴가) 규정 삭제 (안 제14조의2제3항)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신설)으로 기존 조항과 중복
 - 여성보건휴가: 매월1일(무급, 생리기간 중 휴식사유)
 - 임신검진휴가: 임신기간 내 10일(유급, 임신검진의 사유)

나. 특별휴가(학습휴가) 확대 (안 제14조의2제9항)

- 각급 학교 근무자와 각급 학교 외 근무자의 학습휴가 부여 일수를 통일하여 공무원에게 연간 4일 이내의 학습휴가 부여

다. 특별휴가(포상휴가) 신설 (안 제14조의2제10항)

- 5일 이내의 포상휴가 신설 (직무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라. [별표3] 경조사별 휴가 신설 및 확대 (안 제14조의2제1항 관련)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사항 반영
 - 배우자 출산휴가: 5일 → 10일(확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휴가: 1일(신설)
-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출산 휴가: 1일(신설)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휴가: 2일 → 3일(확대)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 번호 제2029호로 제출되어 2020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습휴가와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취지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9조1)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²⁾ 적용되며,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적용되는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복무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인바, 조례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경조사별 휴가일수의 조정(안 제14조의2제1항)

- 동 개정조례안은 제14조의2제1항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개정하였는바, 결혼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에 대해 1일의 휴가일수를 새롭게 부여하였으며 배우자의 출산 휴가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고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출산 휴가일수를 신설(1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에 대한 사망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1)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1] 전국 시·도 교육청의 경조사별 휴가일수(2020. 12. 9 기준)

구분	대상	교육청별 조례 규정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현행	개정안																
결혼	본인 (*복무규정 5일)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자녀 (*복무규정 1일)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1			1								1	1
출산	배우자 (*복무규정 10일)	5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5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복무규정 20일)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중) : 증조부모, 증외조부모 포함	2	3	3	3	3	3	3	2	3	3	3	3	3	3	3	3	3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복무규정 1일)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1				1		1						1	1

○ 우선 배우자의 출산 휴가일수 조정과 관련해서는 2019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2항의 [별표1]이 개정되어 배우자의 출산 휴가일수가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①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결혼 휴가일수 1일”과 “②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출산 휴가일수 1일” 그리고 “③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에 대한 사망 휴가일수 3일”과 관련해서는,

앞의 [표1] 전국 시·도 교육청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부여 현황과 교육청의 개정배경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동 개정조례안에서 부여하는 휴가일수가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①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결혼 휴가일수 1일”과 “②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출산 휴가일수 1일”은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특별휴가가 아니지만, 서울시의 경우를 참고하여 휴가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³⁾

따라서 교육청이 다른 시·도교육청과는 달리 서울시의 기준에 맞춰 특별휴가들을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여성보건휴가 등의 삭제(안 제14조의2제3항)

- 여성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로서 여성보건휴가와 임신검진휴가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2014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되면서부터였으며, 당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여성보건휴가 등에 대해 별도의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3) 「서울특별시 공무원 공무 조례」

제24조(특별휴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이후 2019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제7조의7제10항과 제11항에(현행 제11항 및 제12항)⁴⁾ 여성보건휴가와 임신검진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⁵⁾ 따라 대통령령의 적용을 우선시함으로써 인해 현행 조례상의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인바, 조례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이 2019년이었던 점에 있어 현행 조례의 개정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바, 교육청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적기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학습휴가의 형평성 제고(안 제14조의2제9항)

- 동 개정조례안 제14조의2제9항의 학습휴가는 「평생교육법」 제8조에⁶⁾ 따라 교육청 소속 전체 지방공무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4일 이내로 각급 학교 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연 2일 이내의 범위에서 학습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근무기관에 상관없이 교육감 소속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연 4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공통적으로 부여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현재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특별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에서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30311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⑩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⑪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는 2일의 ‘사가독서학습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바, 서울시와 교육청의 기관 형평성 측면에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전국 시·도 교육청의 학습휴가 일수(2020. 12. 9 기준)

연번	시도명	학습휴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각급 학교 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1	서울	4일	2일
2	부산	4일	4일
3	대구	3일	-
4	인천	3일	3일
5	광주	4일	-
6	대전	4일	4일
7	울산	4일	-
8	세종	2일	-
9	경기	4일	-
10	강원	5일	5일
11	전북	5일	5일
12	전남	3일	3일
13	충북	5일	5일
14	충남	5일	5일
15	경북	3일	-
16	경남	4일	2일
17	제주	-	-

※ 학습휴가를 규정한 교육청 중 서울과 경남만 근무기관별 차이를 두고 있음.

4) 포상휴가 신설(안 제14조의2제10항 신설)

○ 동 개정조례안 제14조의2제10항은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복무책임자인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이와 같은 포상휴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위법령의 직접적인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⁷⁾

7) 이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법원공무원규칙」 등에서는 기관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이8)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서9)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조례로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진취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포상휴가 기간과 관련하여 포상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이10) 모두 포상휴가 기간을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시·도 교육청별로 포상휴가의 유무에도 차이가 있고 포상휴가 일수에도 차이가 있는 바 동 개정조례안이 명시한 ‘5일 이내’의 기간이 포상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8)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1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⑬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포상휴가)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포상휴가)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표3] 전국 시·도 교육청의 포상휴가 일수(2020. 12. 9 기준)

연번	시도명	포상휴가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5일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7	울산	-
8	세종	3일
9	경기	-
10	강원	5일
11	전북	-
12	전남	-
13	충북	5일
14	충남	-
15	경북	5일
16	경남	-
17	제주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은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연간 4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의2제9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14조의2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u>1</u>
출산	배우자	<u>10</u>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u>1</u>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u>3</u>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의2(특별휴가) ① ~ ② (생략)</p> <p>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p> <p>④ ~ ⑧ (생략)</p> <p>⑨ 「<u>평생교육법</u>」제8조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학습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연 4일 이내</u></p> <p>2. <u>각급 학교 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연 2일 이내</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14조의2(특별휴가) ① ~ 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p>⑨ 공무원은 「<u>평생교육법</u>」 제8조에 따라 <u>연간 4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⑩ <u>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u></p>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제14조의2제1항 관련)</p>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제14조의2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70%;">대 상</th> <th style="width: 20%;">일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결혼</td> <td>본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자녀</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출산</td> <td>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body> </table>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70%;">대 상</th> <th style="width: 20%;">일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결혼</td> <td>본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자녀</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출산</td> <td>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body> </table>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현 행			개 정 안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입양	본인	20